2019년 부산광역시 남구 예산기준 재정공시

2019. 2.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인)

◈ 우리 구의 2019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3,600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24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3,377억원)보다 223억원이 많습니다.

○ 일반회계 기준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764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2,307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74억원입니다.

◈ 우리 구의 2019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22.83%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34.95%입니다.

◈ 우리 구의 2019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1.5억원 적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유사단체에 비해 높은 상황이지만 보조금의 비중이 높아 작년대비 재정자립도가 낮아졌으며, 행정운영경비, 사회복지·지역개발 분야 등의 재정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세입 대비 지출이 더욱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세입확충을 위한 징수강화 노력, 세출구조 조정 등 효율적인 재원배분과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bsnamgu.go.kr)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조정실 이지성(607-4025)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부산광역시 남구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2019년도 (A)	2018년도 (B)	증감 (C=A-B)	2019년도 (A)	2018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3,600	3,351	249	3,377	3,083	294
	세출예산	3,600	3,351	249	3,377	3,083	294
	지역통합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당초예산]	22.83	24.83	△2.00	15.24	16.56	△1.32
	재정자주도[당초예산]	34.95	37.89	△2.94	32.73	35.83	△3.10
	통합재정수지[당초예산]	△1.54	2.87	△4.41	11	10	1
재정운용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편성기준별운영상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국외여비 편성현황	2	2	-	2	2	-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8	9	△1	12	13	△1
재정운용성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해당없음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해당없음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해당없음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해당없음					

▸ 유사 지방자치단체 : 인구와 재정여건이 유사한 자치단체(22개)

부산 중구, 부산 서구, 부산 동구, 부산 영도구, 부산 동래구, **부산 남구**, 부산 북구, 부산 금정구, 부산 연제구, 부산 수영구, 부산 사상구, 대구 중구, 대구 서구, 대구 남구, 인천 동구, 광주 동구, 광주 남구, 대전 동구, 대전 중구, 대전 대덕구, 울산 중구, 울산 동구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9년도 남구의 세입예산 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359,959	334,506	-	18,493	6,960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2015	2016	2017	2018	2019
251,735	270,418	278,265	335,130	359,959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33,353	100	252,323	100	258,539	100	310,691	100	334,506	100
지방세	39,983	17.13	44,895	17.79	45,850	17.73	57,388	18.47	59,215	17.70
세외수입	12,873	5.52	13,608	5.39	14,436	5.58	19,758	6.36	17,160	5.13
지방교부세	4,500	1.93	4,500	1.78	4,500	1.74	4,500	1.45	4,500	1.35
조정교부등	34,492	14.78	34,492	13.67	36,082	13.96	36,082	11.61	36,021	10.77
보조금	133,361	57.15	137,811	54.62	136,835	52.93	163,375	52.58	190,234	56.87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8,144	3.49	17,017	6.75	20,836	8.06	29,588	9.53	27,376	8.18

▸ 당초예산 총계기준

2-2. 세출예산

1년 동안 남구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359,959	334,506	-	18,493	6,960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5	2016	2017	2018	2019
251,735	270,418	278,265	335,130	359,959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33,353	100	252,323	100	258,539	100	310,691	100	334,506	100
일반공공행정	10,695	4.58	15,521	6.15	16,340	6.32	16,147	5.20	13,722	4.10
공공질서및안전	359	0.15	527	0.21	500	0.19	591	0.19	1,941	0.58
교육	606	0.26	1,365	0.54	1,340	0.52	1,299	0.42	1,979	0.59
문화및관광	1,957	0.84	3,065	1.21	4,682	1.81	5,091	1.64	4,935	1.48
환경보호	10,502	4.50	11,488	4.55	13,050	5.05	14,103	4.54	14,987	4.48
사회복지	133,690	57.29	135,430	53.67	136,606	52.84	162,949	52.45	190,563	56.97
보건	3,472	1.49	6,130	2.43	6,889	2.66	6,817	2.19	7,412	2.22
농림해양수산	2,786	1.19	3,252	1.29	2,538	0.98	2,963	0.95	2,709	0.81
산업·중소기업	193	0.08	1,514	0.60	278	0.11	105	0.03	317	0.09
수송및교통	2,073	0.89	2,775	1.10	2,100	0.81	2,877	0.93	2,798	0.84
국토및지역개발	5,054	2.17	2,570	1.02	6,029	2.33	13,186	4.24	10,923	3.27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예비비	2,338	1.00	8,565	3.39	4,166	1.61	17,739	5.71	13,491	4.03
기타	59,628	25.56	60,121	23.84	64,021	24.77	66,824	21.51	68,729	20.54

▸ 당초예산 총계기준

2-3. 지역통합재정통계

-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남구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년 당초예산 (A)	2019년 예산 (B)	증감액 (B-A)	비율 (B-A)/A
합계	335,739	360,355	24,616	7.33
남구	335,130	359,959	24,829	7.41
교육청	-	-	-	-
출연 · 출자기관	609	396	△213	△34.99

- 당초예산 총계기준
- 교육청 : 해당없음
- 출자출연기관(1개) : 재단법인 남구장학회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9년도 남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22.83%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22.83 (31.02)	334,506 (334,506)	76,375 (103,751)	230,755 (230,755)	-	27,376 (-)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전**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 포함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당초예산	22.65 (26.14)	23.19 (29.93)	23.32 (31.38)	24.83 (34.35)	22.83 (31.02)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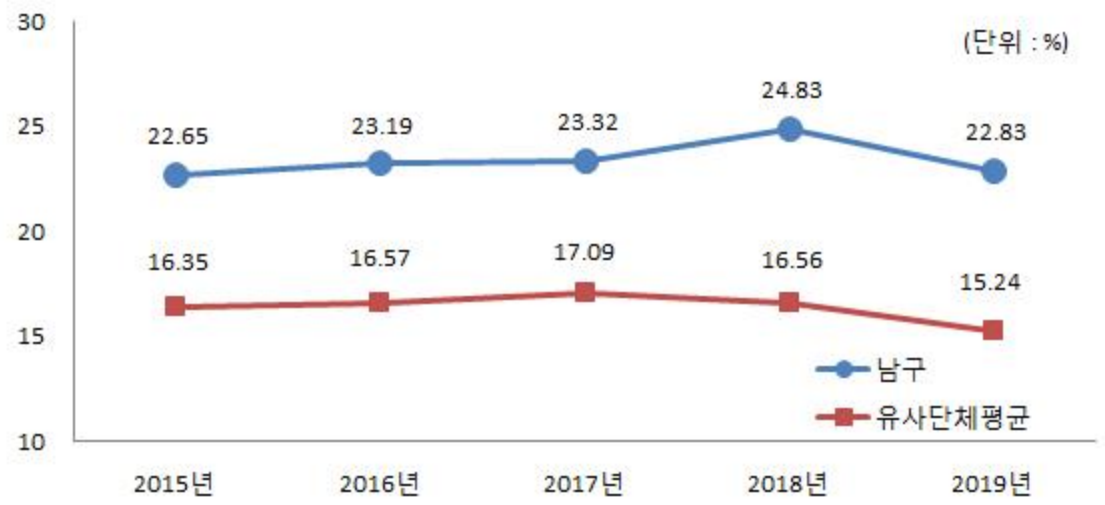

☞ 주택재개발에 따른 아파트 입주 세대수가 전년도 대비 감소하는 등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소폭 감소하고, 일자리 창출 분야 및 사회복지비 수요증가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등 이전재원은 증가하여, 재정자립도가 작년대비 2.00% 하락하였습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도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9년도 남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34.95% 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34.95 (43.13)	334,506 (334,506)	116,896 (144,272)	190,234 (190,234)	-	27,376 (-)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전**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 포함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당초예산	39.36 (42.85)	38.64 (45.38)	39.01 (47.07)	37.89 (47.42)	34.95 (43.13)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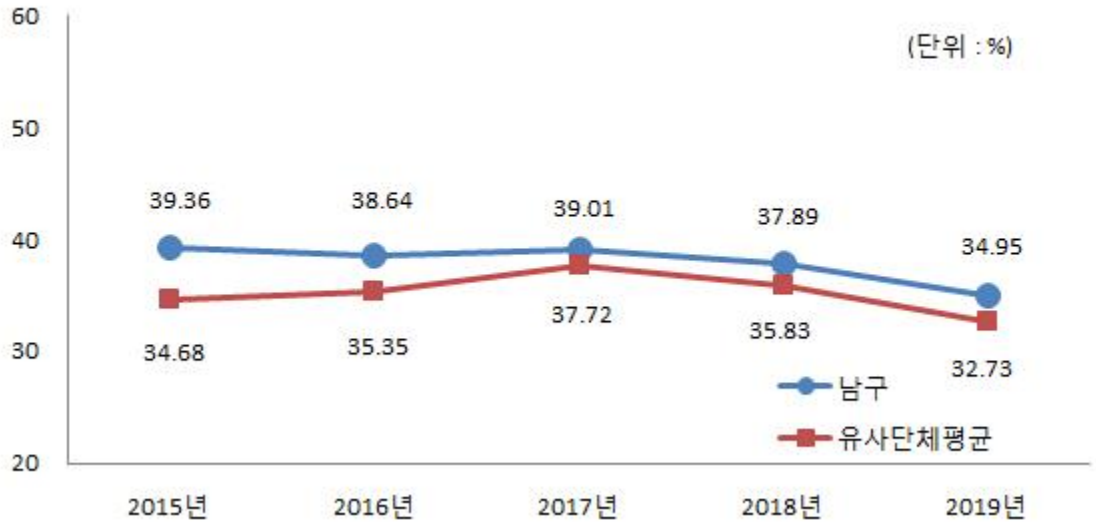

☞ 자주재원(자체수입+조정교부금 등)이 소폭 감소하고, 국·시비 보조금의 비중이 증가되어 재정자주도는 작년대비 2.94% 하락하였습니다.

3-3. 통합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세입 측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응되는 세출 측면의 집행액이 드러나지 않아 흑·적자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남구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계규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 수지 2 I=A-G+F
	세입(A)	지출(B)	융자회수 (C)	융자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316,421	351,706	1	50	49	35,180	351,755	△35,334	△154
일반회계	307,613	333,170	0	0	0	26,000	333,170	△25,557	443
기타 특별회계	8,604	17,996	0	0	0	9,180	17,996	△9,392	△212
기금	204	540	1	50	49	0	589	△385	△385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이전수입+자본수입)-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이전수입+자본수입)-통합재정규모+순세계잉여금

❖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15	2016	2017	2018	2019
통합재정수지 1	△8,643	△21,917	△26,324	△37,538	△35,334
통합재정수지 2	5,410	224	779	287	△154

☞ 통합재정수지 1의 경우 복지비 증가, 공무직 전환 등에 따른 인건비 증가, 빙상장 등 공공시설 개관에 따른 경상경비 증가 등 세입에 비해 지출요인 과다 증가로 353억 적자이며, 통합재정수지 2의 경우 세입에 비해 지출수요는 증가하고 순세계잉여금은 다소 감소하여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남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	연평균 증가율
세입		444,362	456,420	472,747	485,852	499,231	2,358,612	3.00
	자체수입	85,954	88,363	91,537	94,610	97,736	458,200	3.30
	의존수입	314,353	325,128	337,472	346,463	355,625	1,679,041	3.10
	지방채	0	0	0	0	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4,055	42,929	43,738	44,779	45,870	221,371	1.00
세출		444,362	456,420	472,747	485,852	499,231	2,358,612	3.00
	경상지출	93,713	97,666	102,950	118,458	122,598	535,385	6.90
	사업수요	350,649	358,754	369,797	367,394	376,633	1,823,227	1.8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판단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남구의 2019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업수	예산액
총 계	28	10,003
여성정책추진사업	3	44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3	9,681
자치단체별도추진사업	2	278

▸ 2019년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 성인지예산서 바로가기

●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성평등 문화예술 콘텐츠 확산, 여성노동자 역량강화 및 경력개발 지원 등이 해당됩니다.

● **성별영향분석평가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 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 기준	-예산편성 한도 설정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 다음은 남구의 2019년 사업예산과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입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예산규모 (당초예산)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359,959	-	2,259	-

▸ 2019년 당초예산 기준

❖ 2018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 반영액	비고
총 액			2,259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안전총괄과	용호로106번가길 일원 LED보안등 설치(교체)	20	신규사업
〃	〃	동제당로 일원 노후 가로등 교체	35	〃
〃	교통행정과	수영로69번길 주거지전용주차장 증축	600	〃
〃	〃	구거부지 복개 후 주차장 설치	600	〃
〃	건 설 과	유엔평화로14번길 일원 노후 골목길 도로 포장	4	〃
〃	〃	새부산유치원 앞 도시계획 도로 개설	1,000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 주민참여예산 바로가기

4-4. 성과계획서

-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남구의 2019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 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개수	지표수				
합계	8	55	126	96	352,999	328,779	24,220
의회사무국	1	1	4	1	1,129	1,130	△1
기획조정실	1	4	6	6	14,602	19,664	△5,062
총무국	1	15	35	24	68,902	68,611	291
주민생활국	1	20	41	28	207,729	182,596	25,133
안전도시국	1	9	22	22	40,678	36,190	4,488
보건소	1	2	7	9	8,989	7,790	1,199
도서관	1	1	6	3	1,951	1,238	713
시설관리사업소	1	3	5	3	5,799	8,275	△2,476
동주민센터	0	0	0	0	3,220	3,285	△65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 성과계획서 바로가기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중 인건비의 비율
22.83	34.95	56.97	16.72	62.73	66.25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 비율은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경상비인 행정운영경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인건비 비율의 인건비는 공무원·기타직·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포함합니다.

4-6.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기준액(총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99	58	-
	부단체장		41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71	265	△6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249	90	△2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82	
	의원국외여비		64	
	의원역량개발비 (민간위탁)		11	
지방보조금		1,369	1,273	△96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통장: 기본수당 월 200천원, 회의참석수당 1회당 20천원(월2회) •반장: 수당 연 50천원	1,329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인당 1,492천원	1,731	-
공무원 일·숙직비		1일 60천원	94	-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관련경비는 2018년부터 총액한도제로 운영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9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 우리 구는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기준에서 정한 기준액보다 적거나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는 공무원 1인당 1,492천원 기준, 공무원 일 · 숙직비는 1인당기준 6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7. 국외여비 편성현황

2019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352,999	208	21	187	0.0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예산총계 (A)	247,953	265,574	272,574	328,779	352,999
국외여비 총액 (B=C+D)	103	135	218	227	208
국외업무여비 (C)	13	15	15	18	21
국제화여비 (D)	90	120	203	209	187
비율	0.04%	0.05%	0.08%	0.07%	0.06%

국외여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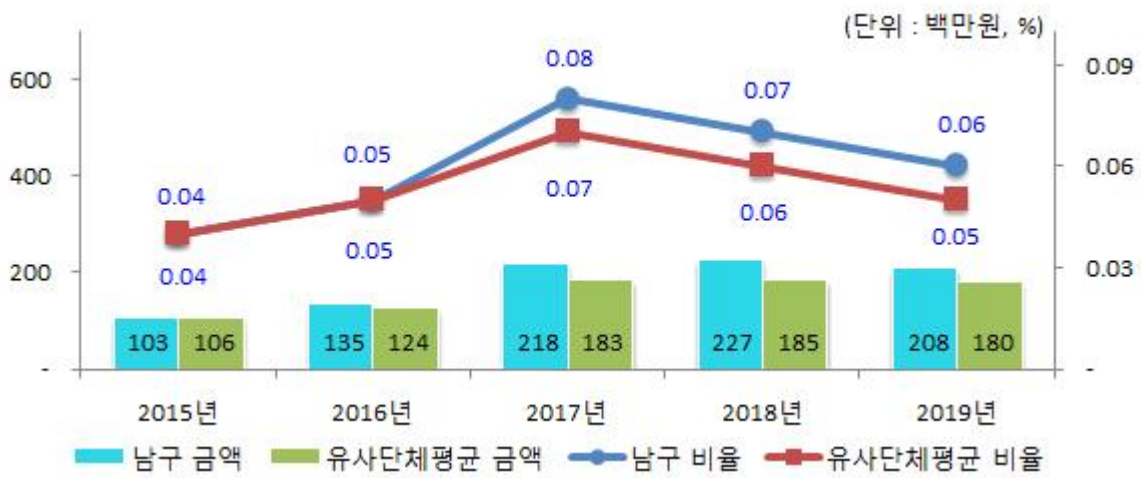

4-8.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남구가 2019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334,506	849	0.2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19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예산액	233,353	252,323	258,539	310,691	334,506
행사·축제경비	288	514	381	879	849
비율	0.12%	0.20%	0.15%	0.28%	0.25%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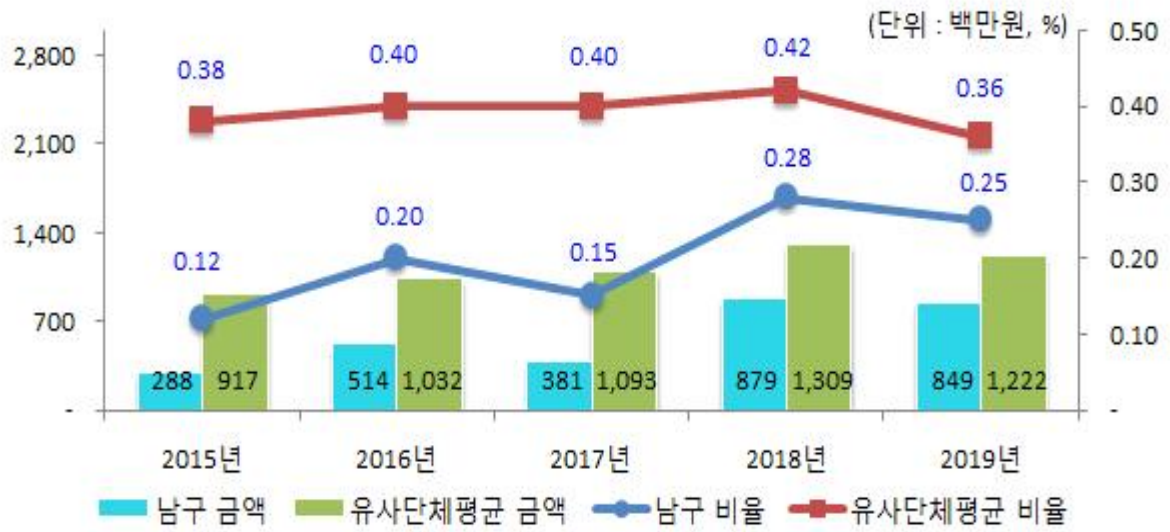

5 재정운용성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 해당없음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 효율화)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 자치구는 공시항목에서 제외(특 · 광역시에 합산반영)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 해당없음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 자치구는 공시항목에서 제외(특 · 광역시에 합산반영)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 해당없음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 해당없음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